보험위험의 한정에서 나서는 법적요구

김 성 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만일의 경우도 예견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자연재해가 뜻밖에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비가 없으면 어려운 형편에 놓일수 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25권 50폐지)

사람들의 생활과정에는 뜻밖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나 불상사고로 인한 경제적손해와 그와 관련한 일시적불안정이 있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손해를 회복하여 생활상안정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나온것이 보험이다. 보험은 자연재해예방대책에 비해볼 때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데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명건강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이러저러한 요인들을 위험이라고 하며 보험에서는 그러한 요인들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경제적손해를 줄수 있는 우연적인 현상을 가리켜 위험이라고 한다.

보험에서 위험을 담보한다는것은 경제적손해의 원인으로 되는 어떤 위험을 미리 없애거나 막는다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즉 위험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실질적으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재정적으로 제때에 보상해줌으로써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해나갈수 있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하여 보험이 사람들에게 손해를 가져다주는 모든 우연적인 현상, 모든 위험을 다 담보할수는 없다.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이 천태만상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생활과정에 있게 되는 위험의 종류도 헤아릴수 없이 많으며 그 크기나 범위 역시 각이하다. 보험자가 앞으로 있을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일일이 예견하고 구체적인 타산밑에 그것을 담보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것은 불가능하다. 이로부터 보험에서는 보험자가 담보해줄수 있는 위험을 일정한 범위로 한정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것이다.

보험이 담보할수 있는 위험을 보험위험 또는 담보위험이라고 한다.

보험위험을 한정한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보험자가 앞으로 있을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들가운데서 자기가 담보해줄수 있는 위험들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들앞에 명확히 제시하는것이다.

보험사업을 그 목적과 사명에 맞게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보험자가 보험위험의 한정에 대한 법적요구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보험위험의 한정에서 나서는 법적요구는 무엇보다먼저 보험자가 보험위험을 한정하는데서 그에 관한 기술적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는것이다.

보험위험한정의 기술적조건은 류형별에 따르는 위험의 본질적속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다시말하여 위험 그자체의 성질을 밝히고 평가하여 인간생활에 미칠수 있는 위험의 대상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객관적요소들을 보험위험한정의 기술적조건이라고 한다.

보험위험한정의 기술적조건에는 우선 위험의 우연성이 있다.

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으로 되려면 그것이 전적으로 우연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것이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우연성은 위험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 위험에 의하여 손해가발생하겠는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손해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되겠는가 하는데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즉 보험위험은 그 발생을 도저히 예견할수 없으며 그로부터 피해를 입게 될 사람에 의하여 좌우되는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포함하고있다.

만일 위험발생이 우연적인것이 아니라 필연적인것이라면 보험자는 응당 그러한 위험을 담보하려고 하지 않을것이며 또 위험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로 인한 손해는 없을것이라는 것이 확정적이라면 그 누구도 보험에 들려고 하지 않을것이다. 우연적인 위험만이 보험위험으로 될수 있으며 따라서 우연성은 보험위험을 한정하는데서 선결조건으로 된다.

보험위험한정의 기술적조건에는 또한 위험발생률측정의 가능성이 있다.

어떤 위험이 보험위험으로 되려면 그 발생률을 측정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위험발생률을 확실하게 예측하는것은 보험에서 선차적인 요구로 나선다.

보험은 경험통계학에 기초하여 집계된 일정한 기간의 위험발생과 그에 의한 총체적인 손해, 보험단체에 망라된 경제단위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확률론의 《큰수의 법칙》을 적용하여 가장 합리적인 보험료률을 산정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를 받아들여 보험기금을 마련하여야만 원만히 진행될수 있다. 그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험이 일정한 기간에 얼마나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보험위험이 우연성을 가지는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확률과 통계학적계산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얼마만큼 발생하겠는가를 가늠하는것은 가능하다. 우연성을 가진 위험이 일정한 기간에 반드시 얼마만큼 발생한다는것은 곧 《우연사고의 필연화》를 의미한다.

우연사고의 필연화정도를 밝히는것 다시말하여 위험이 반드시 어느 정도 생기겠는가를 계산하는것을 위험발생률의 측정이라고 한다. 실례로 어떤 재산이 앞으로 1년안에 어떤 위험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멸실되겠는지는 도저히 예측할수 없다. 그러나 그와 같거나류사한 대상전체에 한하여 해당 기간에 발생할수 있는 우연사고는 지난 시기의 통계에 기초하여 비교적 확실하게 예측할수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일어날수 있는 우연사고에 대한 예측을 위험발생률의 측정, 일명 평균위험률의 측정이라고 한다.

보험위험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적어도 일정한 정도의 계산적기초를 제공해줄수 있는 위험의 빈도수—위험발생률이 측정되여야 한다. 위험발생률을 측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손해를 측정하여야 그에 맞게 보험료를 정하고 보험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다. 이로부터 위험발생률의 측정가능성은 보험위험한정의 기술적조건의 하나로 된다.

보험위험한정의 기술적조건에는 또한 위험크기측정의 가능성이 있다.

위험의 크기는 곧 위험의 세기이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량에 의하여 평가된다. 따라서 위험의 크기를 측정할수 있다는것은 그러한 위험으로 입게 되는 재산적손해를 화폐로 평가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위험의 크기는 이러저러한 요인과 조건에 따라 각이하다. 실례로 다같은 사회적위험이라고 해도 전쟁위험은 도난위험에 비할바없이 크며 자연적위험인 바다물에 의한것이라고 해도 식료품이나 일용품보다 석탄이나 광석에 미치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작다. 텔레비죤과 콤퓨터, 자동차에 비해 비행기나 건물 등 가치가 높은 재산에 미치는 위험은 훨씬 크다.

화산이나 지진, 핵 등에 의한 위험은 그 크기를 예견하고 측정하는것이 도저히 불가 능하므로 보험위험에 속하지 않는다.

이처럼 보험위험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위험 그자체가 우연적이면서도 측정할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자는 위험의 본질적속성과 그에 대처하는데 필 요한 조건을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자기가 담보하려는 위험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보험위험의 한정에서 나서는 법적요구는 다음으로 보험자가 보험위험을 한정하는데 서 그에 관한 경제적조건을 잘 타산하는것이다.

보험위험한정의 경제적조건은 주로 보험수요와 공급관계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말한다.

보험이 진행되려면 보험에 대한 수요와 함께 그것을 충족시켜주려는 위험담보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험담보의사가 존재한다고 해도 수지타산이 없이 보험위험을 한정하게 되면 오히려 보험수요를 떨어뜨리고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해주지 못할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자기가 담보할 위험을 엄밀한 경제적타산에 기초하여 한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보험위험한정의 경제적조건이다.

경제적조건에 부합되는 보험위험으로 되려면 우선 위험이 지나치게 작지 말아야 한다. 지나치게 작은 위험은 재산소유자가 자체의 능력만으로도 능히 극복할수 있다고 인 정되는 위험을 말한다.

보험위험한정의 기술적조건에서는 위험의 속성을 놓고 위험의 크기를 론한다면 보험 위험한정의 경제적조건에서는 그 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경제적리해관계, 경제적수요의 정도를 기준에 놓고 위험의 크기를 론하게 된다. 어떤 위험이 현실화되였을 때 그 손해를 피보험자자체로 회복하는것이 보험료의 정기적지불에 의해 축적된 보험보 상금에 의한 회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익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자체로 손해 를 회복하는것보다 보험으로 보상받는것이 리익이라면 그 위험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의 견지에서 상대적으로 큰 위험으로 되며 손해를 자체로 부담하는것이 보험료를 내고 보험으로 보상받는것보다 리익이라면 그 위험은 지나치게 작은 위험으로 된다.

위험이 지나치게 작으면 보험수요가 있을수 없으며 결국 보험이 진행될수 없게 된다. 경제적조건에 부합되는 보험위험으로 되려면 또한 그것이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위험이 아니여야 한다는것이다.

해일, 화산과 같은것은 수년 혹은 수십년에 한번 있겠는지 없겠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사고이다. 이러한 위험에 있어서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는 일시 보험에 대한 수요가생기거나 높아질수 있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그것이 현저히 감소되거나 없어질수도 있다.

보험은 부조나 원조와 같이 어떤 일이 제기되었을 때 비로소 취해지는 일시적이며 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우연사고의 발생과 그 결과를 예견하고 그에 대처할 목적밑에 진행하는 지속적이며 정상적인 사업이다.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위험은 그 발생률이나 크 기를 사전에 측정하기 어려울뿐만아니라 보험수요도 제기되지 않기때문에 보험위험으로 될수 없다.

경제적조건에 부합되는 보험위험으로 되려면 또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낄수 있는 위험이여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위험이 그 어떤 한정된 범위의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전체에 미치는 위험이

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실례로 지진위험에 대한 보험이 지진대에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필수적인 반면에 그밖의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의도 없다. 더우기 지진의 발생과 그로 인한 후과는 도저히 예측할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수요의 일반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집합시키는것을 경영원리로 하는 보험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수 없고 지어 보험업에 불리한 후과가 초래될수 있다.

경제적조건에 부합되는 보험위험으로 되려면 또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그리고 같은 정도의 손해를 입힐수 있는 위험이 아니여야 한다는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그리고 같은 정도의 손해를 입힐수 있는 위험인 경우에는 그것이 보험의 2차위험(보험기술적위험)을 급격히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위험은 보통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의 위험부담관계에 기초하여 1차위험과 2차위험으로 구분한다. 1차위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위험으로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받게 되는 기본위험이며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주요위험이다. 2차위험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전가되는 개별적위험들을 집결하고 위험을 평균화한 보험자가 수입보험료총액에 비한 지불보상금의 초과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수 있는 가능성이다.이 위험은 보험자가 보험경영에서 받게 되는 위험이라는데로부터 보험기술적위험이라고도 말한다.

보험기술적위험에 의한 손해는 보험자가 입는것이므로 보험자는 전체 보험대상의 위험률, 손해률에 대한 통계학적분석에 기초하여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업을 경영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2차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없다. 2차위험은 보통 1차위험에 의하여 산생되는것으로서 2차위험발생의 주요원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그리고 같은 정도로 손해를 입힐수 있는 위험이거나 일정한 년도를 기준으로 예견한 위험보다 훨씬 크게 발생되는 파국적인 자연재해와 기타 우연적인 사고이다. 보험의 기술적위험은 보험자에게 무거운 부담을 가져다줌으로써 보험발전을 저애하고 때에 따라서는 보험경영자체를 위태롭게 한다.

보험업은 우연사고의 시간적차이를 리용하여 서로 다른 손해의 정도를 계산평가하여 진행하는 기업활동이므로 사고의 동시성, 손해의 동일성은 보험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의의를 떨어뜨린다. 2차위험이 급격히 증대되면 보험은 자기의 기능을 다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경제적손해를 가져오는 위험에 대한 보험수요와 공급관계를 가능 한 한 정확히 반영하여 보험위험을 한정하여야 한다.

보험위험의 한정에서 나서는 법적요구는 다음으로 보험자가 자기의 담보능력을 충분 히 고려하여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위험을 정하는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보험위험한정의 경제적조건과 관련되여있다. 그러나 보험은 다름아닌 보험자가 상설적인 기구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또 보험자가 담보하기 로 한 위험이 보험위험한정의 경제적조건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 하는것도 과학 기술의 발전수준과 기상조건, 보험자의 능력에 비해볼 때 어느 정도 상대적인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보험자의 담보능력을 특별히 고려하는것은 보험위험을 한정하는데서 중 요한 법적요구의 하나로 된다.

보험자들이 수없이 많고 또 그들의 담보능력이 서로 각이한 조건에서 일반적인 보험 위험한정의 기술적 및 경제적조건도 어느 정도 보험자의 능력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수 있다. 국제보험실무를 놓고보아도 보험위험한정의 조건과 방법은 대체로 류사하지만 보험 자들이 정하는 위험은 보험자의 담보능력에 따라 서로 다르다.

보험자의 담보능력이라고 하면 보험자의 경영관리능력과 보험업무경험, 재보험관계정 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험자의 능력에는 위험 및 손해발생률측정능력,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대한 확보능력, 위험 및 손해빈도수와 그 정도에 부합되는 보험료의 설정능력, 보험사고의 원인과 손해정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능력 등을 가리킨다.

보험업무경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가 다년간의 보험보상거래과정에 축적한 신용과 업무실적에 의하여 평가된다.

보험자의 재보험관계도 보험자의 담보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 된다.

재보험은 보험의 2차위험(보험기술적위험)으로부터 초래되는 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자들사이에 진행되는 보험이다.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들과 재보험관계를 많이 가지고있으면 2차위험을 일정하게 극복할수 있으며 보험업무를 비교적 정상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자기의 담보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험위험을 한정하여야 한다.

보험위험의 한정에서 나서는 법적요구는 다음으로 보험자가 자기가 담보하려는 위험을 보험약관 또는 보험계약(보험증권)에 명확히 반영하는것이다.

이것은 보험자가 담보하려고 한정시킨 위험을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고착시키고 표 현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보험법에서는 보험자들이 자기가 담보하려는 위험들을 보험약관이나 보험계약에 반영할것을 요구한다. 보험약관이나 보험계약은 다같이 법적성격을 띠는 문건들이다.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제정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보험거래의 구체적관계를 성문화한 보험세칙으로서 보험법의 원천의 하나로 인정되고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맺는서면계약(보험증권)이다.

보험자는 자기가 담보해줄수 있는 위험들을 명확히 한정하고 그것을 보험약관이나 보험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재정적부담책임 을 져야 한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보험법은 보험위험의 한정을 보험거래의 성립과 보험사업의 성과적진행을 위한 전제로 인정하고 모든 보험자들이 보험위험한정에서의 법적요구를 철 저히 준수할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보험제도를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완성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보험위험, 보험자